

제1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 1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일반

제 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제 3장 선거기사심의기준의 개정 및 제정

제1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일반

1. 설치근거 및 기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04년 4월 15일) 기사심의위원회는 2003년 12월 17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 운영되었다.

2. 구 성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한국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에 각 1명의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그 결과, 한국언론학회는 최현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원석 변호사, 한국신문협회는 이경일 전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열린우리당은 김주언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한나라당은 이동화 전 서울신문 상무이사, 새천년 민주당은 김재곤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각각 추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에 대해 당적보유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들 7명과 함께 양삼승 변호사, 최광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등 모두 9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3년 12월 17일 프레스센터 8층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차 선거기사 심의회의 겸 발족식을 갖고 호선에 의해 양삼승 위원을 위원장으로, 유원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3. 기 능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의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첫째,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자체 심의·의결을 하여 불공정한 기사의 재발방지를 도모한다.

둘째,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셋째,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정당, 후보자, 언론사는 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하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2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방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제16대 총선·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16대 대선 기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운영방침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안전을 심의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에 ‘경고문 게재’ 결정이라는 새로운 결정유형을 도입하고 ‘후보자의 칼럼게재에 대한 제한’으로 심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과문 게재결정은 법문상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행사를 자제하되 사안이 심각하여 그 적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둘째, 경고문 게재결정을 도입하여 동일유형의 위반사례가 잦은 언론사나 불공정성이 특히 심한 언론사에 대해 경고문을 게재토록 함으로써 자체심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로 하였다.

이는 주의나 경고결정은 후속조치가 없어 언론사가 이를 스스로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한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문제점과 불공정성이 심한 언론사에 대해 경고결정에 그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재조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셋째, 정정보도 게재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여부를 가리는 것이 간단치 않고 조사를 위해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신증을 기해서 행사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의 성격상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실관계가 분명해 정정보도 게재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넷째, 반론보도는 운영상 큰 문제가 없으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결정내용으로 보았다. 다만, 반론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를 필수적으로 경유하게 되어있어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정정보도 내지 사과문 게재를 원하고 있어 반론보도청구를 하지 않고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 게재결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비록 시정요구 사안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내지는 사과문 게재결정이 곤란한 경우 반론보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자체심의에 대한 결정사항으로 주의·경고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의는 특정인에 유·불리하거나 여론조사 요건을 갖추지 않고 보도한 경우에, 경고는 집중적으로 한 후보를 부각시켜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등 선거법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경우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여섯째, 후보자의 칼럼게재를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법이 대폭 강화되고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금지되면서 후보자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칼럼을 게재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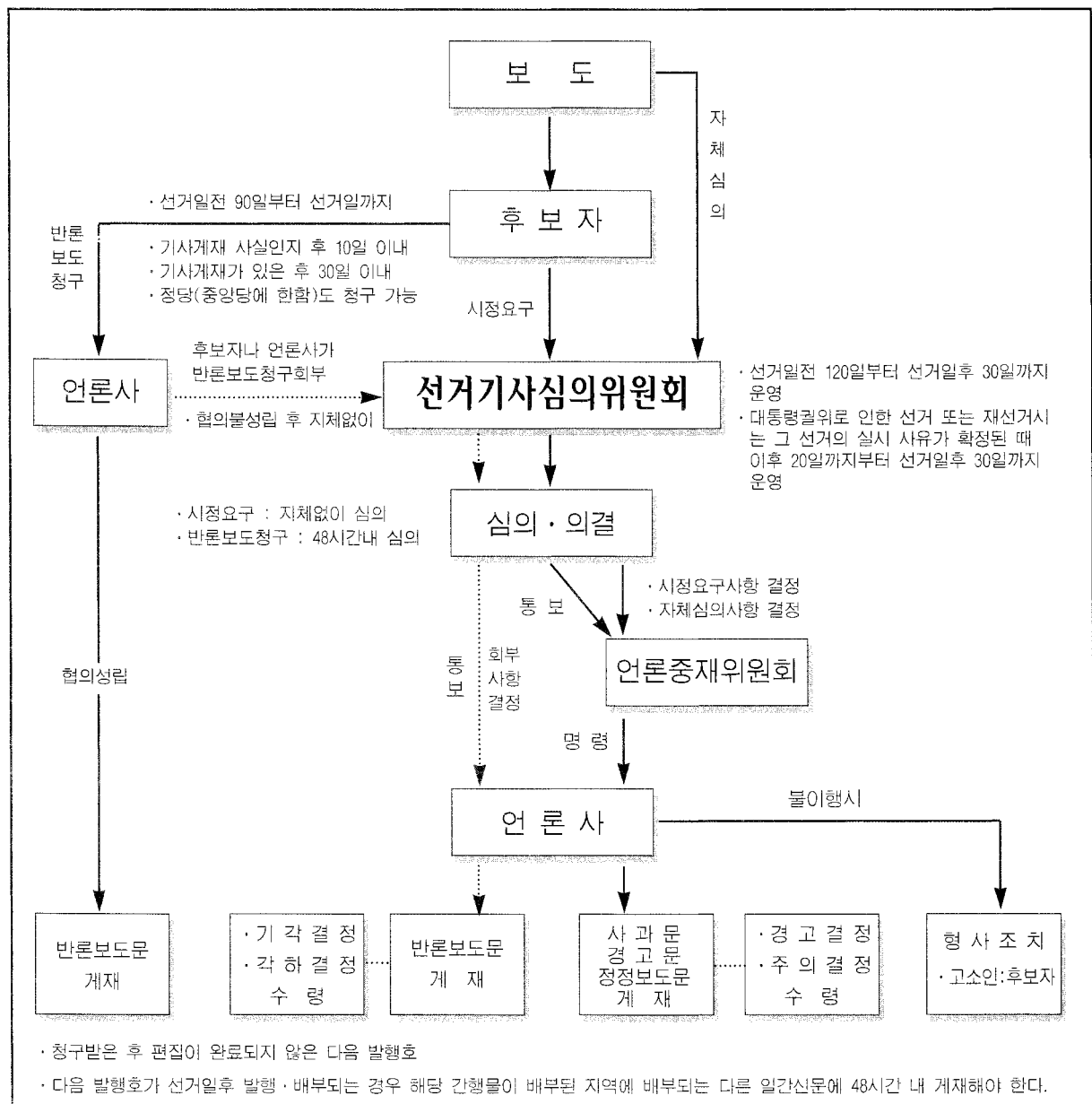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금하는 선거법 규정』을 적용해 후보자의 칼럼게재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후보자의 칼럼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선거와 무관한 소재를 다룬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하였다.

2. 심의·의결 절차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후보자의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 등 세 갈래의 심의를 각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표 1 참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절차

<표 1>



가. 자체심의

심의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자체 심의하여 불공정보도의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경고 결정을 한다.

자체심의는 심의위원회 안에 설치된 선거기사심의 실무팀이 중앙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 주간신문 및 주간지, 월간지 등의 선거 관련 기사에 대한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 사례를 찾아내 이를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자체 심의안건의 개별 심의를 통해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한 결정내용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해당 언론사에 발송하였다.

나. 시정요구

시정요구의 경우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하여 시정요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될 때 문제기사에 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경고 결정을 한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건에 대한 결정을 자체심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언론사에 통보하였다.

다. 반론보도청구 회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사 게재가 있음은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사게재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와 언론사가 반론보도문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해 정당, 후보자,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당 언론사에 통보해 반론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기각 및 각하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각각 그 결정문을 통보한다.

선거법은 또 언론사의 반론보도문 게재시한은 후보자의 게재청구를 받은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호에 게재토록 하고 있으며, 다음 호가 선거일후 발행·배부되는 경우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다른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라. 처벌규정

언론사가 사과문·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게재결정 등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기사 심의결과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법제정 정신에 입각하여 2003년 12월 17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 150일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심의기준에 따라 이를 위반한 기사를 심의·의결하였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69건의 결정을 내렸으며 후보자의 시정요구 9건 등 총 78건을 처리하였다. 자체심의는 주의 11건, 경고 53건, 경고문 게재 5건을 결정하였고 시정요구는 경고 1건, 기각 3건의 결정과 취하 5건이 있었다.

실제 피해구제는 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후보자의 시정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 자체심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 구독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주의 11건, 경고 53건, 경고문 게재 5건을 결정하였다. 자체심의 결정된 69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41건(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칼럼게재 제한 위반이 21건(30.4%), 여론조사보도 요건미비 4건(5.8%), 상업광고제한 위반 3건(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매체별로 보면 일간신문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주간신문과 시사주간신문 각 11건이었다. 일간신문의 경우 지방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41건(87.2%)으로 중앙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6건(12.8%)을 압도했다.

나. 시정요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자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9건의 시정요구를 접수하였으며 그 처리결과는 경고 1건, 기각 3건, 취하 5건이었다. 취하된 5건은 모두 정정보도, 해명보도 등이 게재되어 취하된 사건들이다. 피시정요구인을 분류하면 일간신문 7개 매체(중앙지 6개, 지방지 1개), 지역주간신문 2개 매체로 나타났다.

다. 반론보도청구 회부

반론보도청구는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는 반론보도청구를 하려면 언론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후보자가 일반적으로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보다는 정정보도나 사과문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4. 자체심의 대상매체

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전국에서 발행되는 6,600여종의 정기간행물 중에 구독이 가능하고 정치 기사를 게재하는 서울과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주간지·주간신문·월간지 등 458종의 인쇄매체와 통신 2종 등 총 460개 매체를 대상으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보도기사를 자체심의했다. <표 2·3·4 참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4종(일간신문 28종, 통신 2종, 지역주간신문 88종, 시사주간지 31종, 시사월간지 5종), 부산 5종(일간신문 2종, 지역주간신문 3종), 대구 10종(일간신문 4종, 지역주간신문 6종), 인천 7종(일간신문 3종, 지역주간신문 4종), 광주 14종(일간신문 10종, 지역주간신문 4종), 대전 6종(일간신문 4종, 지역주간신문 2종), 울산 6종(일간신문 3종, 지역주간신문 3종), 경기 60종(일간신문 15종, 지역주간신문 45종), 강원 12종(일간신문 2종, 지역주간신문 10종), 충북 23종(일간신문 5종, 지역주간신문 18종), 충남 29종(지역주간신문 29종), 전북 24종(일간신문 8종, 지역주간신문 15종, 시사월간지 1종), 전남 38종(일간신문 2종, 지역주간신문 36종), 경북 28종(일간신문 2종, 지역주간신문 26종), 경남 39종(일간신문 4종, 지역주간신문 35종), 제주 5종(일간신문 3종, 지역주간신문 2종)이었다.

전체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95종(중앙지 28종, 지방지 67종), 통신 2종, 지역주간신문 326종, 시사주간지 31종, 월간지 6종이었다.

자체심의 대상매체 중 일간신문 및 통신 현황

1. 일간신문 현황 : 총 95종 (중앙지 28종, 지방지 67종)

<표 2>

시도별	매 체 명			
중앙지(28)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대한매일,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신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제일경제,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굿데이,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일간스포츠, 더데일리포커스, 메트로, 에이엠세븐, 코리아타임즈, 코리아헤럴드

시도별	매체명
부 산(2)	국제신문, 부산일보
대 구(4)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인 천(3)	경도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광 주(10)	광주매일, 광주일보, 광주타임즈, 대한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호남일보
대 전(4)	대전매일,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남일보
울 산(3)	경상일보, 광역일보, 울산매일
경 기(15)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서울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시민일보, 아세아일보, 우리일보, 전국매일, 중부일보, 현대일보
강 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충 북(5)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일보, 한빛일보
충 남(0)	
전 북(8)	매일전북,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주매일
전 남(2)	목포일보, 전광일보
경 북(2)	경북매일, 경북일보
경 남(4)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제 주(3)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2. 통신 현황 : 2종 (뉴시스, 연합뉴스)

자체심의 대상매체 중 지역주간지 현황

지역주간지 현황 : 총 326종

〈표 3〉

시도별	매체명
서 울(88)	강남포스트, 격주간 경동신문, 관악신문, 광진신문, 구로타임즈, new용산자치신문,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서울신문, 서울강북신문, 서울강서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우리신문, 서초구민의신문, 성북신문, 송파자치신문, 신용산신문, 양천신문, 영등포신문, 은평타임즈, 종로저널, 주간 강남내일신문, 주간 강남신문, 주간 강동신문, 주간 강서양천신문, 주간 노원우리신문, 주간 동대문신문, 주간 동작신문, 주간 서대문자치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서울송파신문, 주간 은평신문, 주간 종로신문, 주간 중랑신문, 주간 푸른영등포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중랑구민신문

시도별	매 체 명			
	내일신문 49개(강남서초, 강동송파, 강서양천, 거제통영, 고양파주, 과천의왕, 광명, 광주, 구로금천, 구미, 군산, 군포, 김제, 김포, 김해, 남수영, 노원도봉, 대구, 대전, 동남구, 마산, 목포, 무안, 부천시민, 북구, 북구사상, 분당, 사천, 성남, 수원, 수지, 순천, 안동, 안산, 안양, 여수, 울산, 원주, 의정부, 익산, 인천, 일산, 전주, 창원, 천안, 청주, 춘천, 포항, 해운대)			
부 산(3)	기장뉴스, 부산여성신문, 영도신문			
대 구(6)	달서신문, 대구 푸른신문, 라이프매일, 영남의정신문, 위클리포유, 팔공신문			
인 천(4)	경인열린신문, 계양신문, 남동신문, 연수저널			
광 주(4)	광주광산신문, 광주전남 오마이뉴스, 시민의소리, 첨단신문			
대 전(2)	대전타임스, 충청뉴스			
울 산(3)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한울신문			
경 기(45)	가평타임즈, 고양신문, 고양파주시민연합신문, 고양파주자치신문, 과천시대신문, 과천신문, 광명신문, 군포시민신문, 군포신문, 김포뉴스, 김포신문, 대안신문,	더 부천, 동부교차로저널, 미래신문, 민안신문, 복지21, 부천신문, 부천자치신문, 북부연합신문, 세종신문, 수원신문, 시티타임즈, 시흥21,	시흥자치신문, 안산신문, 안산정론신문, 안양광역신문, 양평백운신문, 여주신문, 연천저널, 용인시민신문, 용인신문, 의왕신문, 의정부신문, 이천설봉신문,	이천저널, 자치안성, 파주저널, 파주타임스, 평택시민신문, 평택신문, 포천신문, 풍양신문, 화성오산신문
강 원(10)	강릉신문, 강원리뷰, 강원북부신문,	삼척동해신문, 시민의신문, 영월신문,	원주투데이, 주간 설악신문, 주간 태백신문,	홍천신문
충 북(18)	괴산증평신문, 보은신문, 삼군신문, 영동생활뉴스신문, 영동신문,	음성뉴스, 음성신문, 재천단양뉴스, 주간 예성신문, 주간 옥천신문,	주간 제천신문, 주간 진천신문, 진천군민신문, 진천시사신문, 충북뉴스,	충주신문, 충청리뷰, 투데이제천
충 남(29)	뉴스서천, 뉴스청양, 만빛신문, 무한정보신문, 백제사랑백제신문, 보령신문, 서해안신문, 연기신문,	온양아산신문, 주간 공주신문, 주간 금산민보, 주간 금산신문, 주간 금산저널, 주간 당진시대, 주간 문화신문, 주간 보령시민신문,	주간 서령신문, 주간 서천신문, 주간 아산신문, 주간 예산신문, 주간 온양신문, 주간 온주신문, 주간 우리고장당진뉴스, 주간 진악신문,	주간 천안신문, 주간 홍성신문, 천안투데이, 청양신문, 태안신문
전 북(15)	고창신문, 고창코리아, 금강뉴스미디어, 김제시민의신문,	김제신문, 남원민보, 남원시민신문, 남원신문,	부안저널, 빛과소금민보, 새부안신문, 서림신문,	순창신문, 정읍신문, 진안신문

시도별	매	체	명
전 남(36)	격주간 담양신문, 곡성신문, 광양만신문,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담양주간신문, 목포저널,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순천시민의신문, 여수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암신문, 예향진도신문, 장성군민신문, 전남신문, 전남타임스,	주간 강진신문, 주간 고흥신문, 주간 나주신문, 주간 목포신문, 주간 순천신문, 주간 영광신문, 주간 완도신문, 주간 장흥신문, 주간 진도군민신문, 주간 푸른바다, 주간 함평신문, 주간 해남신문, 주간 해진신문, 주간 화순신문, 진도타임스, 청해진신문, 향도신문, 화순군민신문
경 북(26)	격주간 군위신문, 격주간 의성신문, 경북내일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김천문화신문사, 문경신문,	상주신문, 새재신문, 생활타임즈신문, 성주신문, 영일만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천시민신문,	주간 경북북부신문, 주간 경북중부신문, 주간 경산신문, 주간 경산자치신문, 주간 고향신문, 주간 김천신문, 주간 영덕신문, 주간 영주신문, 주간 예천신문, 주간 청도신문, 주간 청송신문, 칠곡신문
경 남(35)	거제신문, 거제중앙신문, 거창신문, 경남시사신문, 경남우리신문, 경서신문, 고성신문, 김해신문, 남해뉴스,	남해신문,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사천신문, 새거제,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연합신문,	와룡신문, Weekly경남, 의령신문, 주간 아림신문, 주간 한산신문, 주간 함양신문, 주간 함주신문, 진주신문, 진해신문, 창녕신문, 파인더닷컴, 하동신문, 하동정론, 함안신문, 함양군민신문, 합천신문, 황강신문
제 주(2)	서귀포남제주신문, 제주투데이		

자체심의 대상매체 중 시사주간지 · 월간지 현황

시사주간지 현황 : 총 31종, 시사월간지 현황 : 총 6종

〈표 4〉

분야별	매	체	명
시사주간지(31)	뉴스매거진, 뉴스메이커, 뉴스워크, 뉴스포럼, 매경 ECONOMY, 민주신문, 시민운동연합신문, 시민의신문,	시사뉴스, 시사문화신문, 시사신문, 시사오늘신문, 시사저널, 시사포커스, 오마이뉴스, 월요신문,	이코노미스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대한, 주간동아, 주간시정신문, 주간저널, 주간조선, 주간한국, 주간현대, 한겨레21, 환경비즈니스, 한국시사뉴스, 한국정치경제신문
시사월간지(6)	시사전북, 신동아, 월간 말, 월간 조선, 월간 중앙, 한국논단		

제3장 선거기사심의기준의 개정 및 제정

1. 경과사항

제9조(인용보도)의 내용을 보완하였고 후보자의 칼럼 게재를 제한하는 기준을 2004년 5월 12일자로 제정하였다.

2. 개정내용

제9조(인용보도)에서 『개인의 글을 게재할때는』 부분을 『개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으로 개정하였다.

또 위원회는 칼럼을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의 한 형태로 보고 선거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심의해 오다가 언론사가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제2항에 명문화하였다.

